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7. 12 선고 2024나20187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다276509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7. 12 선고 2024나20187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. 18 선고 2023가소431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포천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수진

변론종결 2024. 6. 14.

판결선고 2024. 7. 12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. 1. 18. 선고 2023가소431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8,302,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, 원고가 2014. 8. 4.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2,470,060원과 등록세 247만 원을 신고납부하고,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2015년 내지 2021년도 재산세 합계 3,362,420원을 납부하는 등 피고에게 합계 8,302,480원을 납부하였는데,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417호 판결의 확정으로 원고로부터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게 되었으므로, 원고가 납부한 위 액수 상당의 취득세 등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가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,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,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.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,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행위에

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.

또 원고 주장의 재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, 이 역시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광우, 판사 황병헌, 판사 김춘호

별지